#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525 발의연월일: 2022. 11. 29.

발 의 자:정경희·권명호·김선교

김성원 · 김영식 · 박대수

배준영 · 성일종 · 이태규

전주혜 • 조수진 • 최연숙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제1항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은 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버스에 탑승 또는 승·하차 중인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관할 교육감이 해당 학원에 대해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1월 27일부터 어린이통학비스 관리 의무의 적용 범위가 학원 이외의 교습소까지 확대·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어린이통학비스를 운영하는 교습소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습소에 대해서도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시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

정지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의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17조(행정처분) ① (생 략) 제17조(행정처분) ① (현행과 같 유)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 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 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 (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 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 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 은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